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2026. 9. 14.

충 북 대 학 교

목 차

제1장 총칙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채용구분	1
4. 지원자격	1
5. 지원서류	2
6. 서류접수	3
7. 공개채용 전형절차	3
제2장 예비심사	3
8. 예비심사의 목적	3
8-2. 전공적합도 심사	4
8-3. 예비심사 및 본심사 대상자 선정	4
8-4. 예비심사위원회	4
제3장 본심사	5
9. 전임교원 지원서류 심사	5
10. 심사 및 평가기준	5
12.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의 구성	5
13. 기초 및 전공심사 방법	6
14. 공개강의 및 면접 대상자의 선정	7
제4장 공개강의 심사	8
15. 공개강의 심사위원의 구성	8
16. 공개강의 심사방법	8
제5장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사조정위원회	9
17. 인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9
17-3. 소위원회	9
18. 심사분쟁의 해결	10
19. 심사거부자에 대한 제재	10
제6장 면접심사	10
20. 면접심사위원의 구성	10
21. 면접심사	11
제7장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의 조정	11
22.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의 조정	11
제8장 특별채용	12
23. 특별채용	12

23-2. 특별채용의 절차	13
23-3.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3
23-4. 특별채용 단계별 심사	14
제9장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14
24. 연구실적물심사	14
25. 최종합격자의 결정	14
26. 정보공개의무	15
27. 직명의 결정	15
28. 임용	16
28-2. 임용시기	16
29. 채용절차의 종료 및 정원배정 제한	16
30. 기타 사항	16

〈별첨 1〉	응모지원서	21
〈별첨 1-2〉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및 연구실적물 목록	29
〈별첨 1-3〉	미술학과 실기분야 작품전 및 연구실적물 목록	30
〈별첨 2〉	전임교원 자격 서류 심사조서	31
〈별첨 3〉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32
〈별첨 3-2〉	법조실무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40
〈별첨 3-3〉	실무경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44
〈별첨 3-4〉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48
〈별첨 3-5〉	산학협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53
〈별첨 3-6〉	미술학과 실기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57
〈별첨 4〉	서약서	62
〈별첨 5〉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서	63
〈별첨 5-2〉	법조실무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65
〈별첨 5-3〉	실무경력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66
〈별첨 5-4〉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67
〈별첨 5-5〉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우수성 심사 평정표	68
〈별첨 5-6〉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양적심사 평정표	69
〈별첨 5-7〉	산학협력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70
〈별첨 5-8〉	미술학과 실기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71
〈별첨 5-9〉	미술학과 연구실적물(작품전) 우수성 심사 평정표	72
〈별첨 5-10〉	미술학과 연구실적물(작품전) 양적심사 평정표	73
〈별첨 6〉	공개강의심사서	74
〈별첨 6-2〉	법조실무 및 실무경력분야 공개강의심사서	75
〈별첨 6-3〉	산학협력분야 공개강의심사서	76
〈별첨 6-4〉	미술학과 실기분야 공개강의심사서	77
〈별첨 7〉	면접심사평가서	78
〈별첨 7-2〉	법조실무 및 실무경력분야 면접심사평가서	79
〈별첨 7-3〉	산학협력분야 면접심사평가서	80
〈별첨 7-4〉	미술학과 실기분야 면접심사평가서	81
〈별첨 8〉	연구실적심사조서	82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인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채용구분)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지원자격)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대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학계열 임상분야는 해당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의학계열 기초분야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예능계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사면허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법조실무분야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약학대학 임상약학분야는 해당 전문학위 자격 소지자
7. 수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수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8. 간호학과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9.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을 7년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③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면제받은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⑤ 원서접수 마감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 다만, 병역의무기간이 최근 3년 이내에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 ⑥ 산학협력중점교수, 장애인 교원 및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초빙분야인 경우에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실적물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력 중 원서접수 마감 전월을 기준으로 판사·검사·헌법연구관의 경력이 3년 이상(재판연구원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인 자에 한하여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위 및 연구실적물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⑧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자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서류) 전임교원 신규임용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되며, 지원서류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예비심사

- 1. 응모지원서 (별첨 1, 온라인 직접입력)
- 2. 학력·성적·경력 등 제반 증명서
- 3.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및 연구실적물 목록(별첨 1-2, 온라인 직접입력)
- 4. 미술학과 실기분야의 경우, 미술학과 실기분야 작품전 및 연구실적물 목록(별첨 1-3, 온라인 직접입력)

② 본심사

- 1. 응모지원서,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설계작품 및 연구실적물 목록의 출력물, 미술학과 실기분야의 경우 작품전 및 연구실적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제출
- 2. 최종학위논문(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최종학위논문은 논문의 목차 및 내용을 A4용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국문 요약하여 첨부한다. 다만, 당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과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연구실적물
- 4.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공고를 통하여 요구한 서류

제6조(서류접수) 인터넷등록을 통해 접수한다.

- ① 인터넷등록은 본교 홈페이지 “교수초빙공고”의 응모지원서에 온라인으로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 ② 등록된 온라인 지원서 및 연구실적목록에 근거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에 통과된 자에 한하여 본심사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4.10.14.)

제7조(공개채용 전형절차)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전형절차에 의한다.

1. 전임교원 소요조사 및 충원계획 수립
2. 기관별 분야별 채용인원 심의
3. 채용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심의 및 확정
4.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 조정
5. 공고(본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전문기관 사이트 또는 일간신문 등) : 지원 마감일전 15일 이상
6. 서류접수
7. 예비심사
8. 본심사
 - 가. 전임교원 자격 서류심사
 - 나. 기초 및 전공심사
 - 다. 공개강의심사
 - 라. 면접심사
9. 비위면직 대상여부 조사
10. 최종합격자 결정
11. 공개채용 결과 통지
12. 연구실적물 검증(해당자에 한함)
13. 채용신체검사, 전력 조사, 신원 조사 등 실시
14.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예정 직명 결정
15. 임용

제2장 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의 목적) 본심사 전에 지원자의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심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학과(부) 또는 부서에 예비심사위원회를 두고 전공적합도 심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제8조의2(전공적합도 심사) ① 예비심사위원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와의 전공 적합도를 ‘가’, ‘부’로 심사하고, 각 위원별로 인비처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예정 학과(부) 및 부서에서는 전공적합도를 논의하기 위해 예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 대상은 전공적합도 심사에서 과반수 이상 ‘가’를 받은 지원자로 한다.

③ 전공적합도 심사 결과 예비심사 대상이 1인인 경우, 총장은 예비심사 진행 여부 및 심사기준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예비심사 및 본심사 대상자 선정) ①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본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심사를 위해 예비심사기준을 정하여 예비심사 실시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기준은 아래 중에서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급별 배점기준 및 본심사 대상자 결정 기준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항목에는 반드시 연구실적을 포함해야 하며 총점 100점 중 50점 이상 배점해야 한다. 단, 채용예정분야가 실무, 건축설계, 실기, 산학협력 분야인 경우에는 50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연구실적 2. 연구경력 3. 강의경력 4. 학술활동경력 5. 임상경력(법조실무경력 포함) 6. 작품활동실적 및 경력(관련 전공에 한함)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기준에 따라 이 지침 제5조 제1항의 예비심사 지원서류 등 교수공채지원서(모든 서류에서 사진, 생년월일은 제외한다)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각 위원별로 인비처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심사 대상자는 예비심사위원 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의 지원자로 한다.

⑤ 선정된 본심사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총장은 연구실적 및 예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심사 진행 여부, 기준점수 미만 지원자의 본심사 추가 여부, 별도의 기초 및 전공 심사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예비심사위원회) ① 채용예정 학과(부) 또는 부서에서는 본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공적합도 심사와 예비심사를 위해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의 내부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임명한다.

제3장 본심사

제9조(전임교원 자격 서류심사) ① 본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제5조 제2항의 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응모자격 유무, 전임교원 자격 유무,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원서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원서류 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과장 및 인사담당자로 구성하며, 심사의 결과(적격 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받도록 하며, 연구실적물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0조(심사 및 평가기준) ① 당해 대학장 및 부속기관장 등은 예비심사 전까지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 2-2항의 연구실적물 등급을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조실무분야는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2), 변리사는 실무경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3),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설계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4), 산학협력분야는 산학협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5), 미술학과 실기분야는 미술학과 실기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6)에 의한다.

② 응모자가 1인일 경우에 총장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전임교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총장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각 항목별 심사의 경우 환산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하되, 연구실적물 심사는 원서접수 마감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⑤ 각 항목의 평가점수 평균 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 삭제 (2010.10.27.)

제12조(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과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② 외부 심사위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내부 심사위원은 학내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부) 교수회의 또는 부서회의를 거쳐 단과대학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심사위원

가.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휴직·과전 등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전임교수 제외) 전원으로 하되,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한다.

나. 단, 당해 학과(부)의 전임교원(휴직·과전 등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전임교수 제외) 전원의 수가 6인 미만일 경우 교내 관련 전공 전임교원을 추가하여 6인 이상으로 한다.

다. 의과대학 의학과는 당해 전공(교실) 또는 유사 전공(교실) 전임교원 4인으로 한다.

라. 교양교육본부, 산학협력단 등(이하 “부서”라 한다)에서는 채용 관련 전공 교내 전임교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 부서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2. 외부 심사위원은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채용 분야 관련(유사) 전공자로 구성한다.

④ 지원자의 석·박사과정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동일 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내부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 각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장은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으로 하되,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이 제1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학부에 충북대학교학칙 [별표1]에 따른 세부개설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신설학과의 심사위원은 채용분야 관련 전공분야 전임교원과 채용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각 심사위원은 심사를 하기 전까지 서약서(별첨 4)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한 경우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을 추가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기초 및 전공심사 방법) 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및 연구실적물을 전임교원신규임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 별첨 3)에 따라 심사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별첨 5)를 작성한다.

다만, 법조실무분야의 경우에는 법조실무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2)에 따라 심사하여 ‘법조실무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서(별첨 5-2)’를 작성하고, 변리사의 경우에는 실무경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3)에 따라 심사하여 ‘실무경력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서(별첨 5-3)’를 작성하며,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설계분야 전임교원임용심사기준(별첨 3-4)에 따라 심사하여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별첨 5-4)’를 작성하되,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및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심사 평정표(별첨 5-5)와 양적심사 평정표(별첨 5-6)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분야는 산학협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5)에 따라 심사하여 ‘산학협력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서(별첨 5-7)’를 작성하고, 미술학과 실기분야는 미술학과 실기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6)에 따라 심사하여 ‘미술학과 실기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별첨 5-8)’를 작성하되 미술학과 연구실적물(작품전) 우수성심사 평정표(별첨 5-9)와 양적심사 평정표(별첨 5-10)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최고점수 1인과 최저점수 1인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공개강의 및 면접 대상자의 선정) ① 총장은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50% 미만(가산점 20점을 제외한 63점 중 31.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제외하고, 고득점 순으로 초빙예정인원의 최소 3배수에서 최대 5배수를 공개강의 및 단과대학 또는 부서 면접 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결정된 공개강의 및 단과대학 또는 부서 면접 대상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총장은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개강의 및 단과대학 또는 부서 면접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순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강의, 단과대학 또는 부서 면접심사 각 심사단계별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으로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를 본부 면접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결시 또는 제16조 제4항에 따른 불합격 처리 등으로 본부 면접 대상자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1인으로 한다.

④ 제8조의3 제5항에 따라 1인으로 본심사를 진행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공개강의 심사

제15조(공개강의 심사위원의 구성) ① 공개강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해 대학의 학장 또는 당해 부서의 부서장(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2. 당해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 전원(휴직·파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전임교원 제외). 다만, 당해 학과(부)의 전임교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유사 학과(학부·전공)의 전임교원을 추가하여 최소 5명 이상을 단과대학장이 추천
3. 의과대학 의학과인 경우는 당해 전공(교실) 또는 유사 전공(교실) 전임교원 10인 이상

4. 부서의 경우 부서장은 채용 관련 분야 전임교원 10인 이상을 추천

② 동일 대학교의 학사학위소지자가 심사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자의 석·박사과정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과 소속 교원 또는 교내·외 관련 분야 교원을 공개강의 심사위원으로 추가 임명·위촉할 수 있다.

제16조(공개강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심사기준(별첨 3)에 따라 심사하고 공개강의 심사서(별첨 6)를 작성, 인비처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조실무분야와 실무경력분야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2 또는 별첨 3-3)에 따라 심사하여 법조실무 및 실무경력분야 공개강의심사서(별첨 6-2)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분야는 산학협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5)에 따라 심사하여 산학협력분야 공개강의심사서(별첨 6-3)를 작성하고, 미술학과 실기분야는 미술학과 실기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6)에 따라 심사하여 미술학과 실기분야 공개강의심사서(별첨 6-4)를 작성, 인비처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최고점수 1인과 최저점수 1인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③ 단과대학장은 교내 교원과 대학원생이 공개 강의를 참관하도록 하는 등 공개 강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공개강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총점의 50% 미만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5장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사조정위원회

제17조(인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사조정위원회(이하 ‘인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대학원혁신처장, 입학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교수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④ 인사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임교원의 학과(기관별) 분야별 채용 여부 및 채용인원 결정
2. 소위원회 구성 여부 및 분쟁사안 해당 여부 결정
3.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안의 재심사 및 조정
4.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검토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심사 및 조정
5. 기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인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총장은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채용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의2(삭제 2011. 5. 4.)

제17조의3(소위원회) ① 인사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사조정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사안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에게 분쟁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분쟁사안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초빙 분야의 공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이 지침의 ‘분쟁사안’이란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된 다툼을 의미하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분쟁사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익명으로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이의제기자와 실제 신청인이 다른 경우도 포함)
 2.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절차 및 내용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3.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관련법령, 판례 및 선례 등에 따라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조사결과를 인사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분쟁의 해결) ① 신규채용 심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 심사위원 전원을 타 대학(교) 전임 교원으로 교체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여 신규교원을 채용하지 못한 학과의 다음번 교수공채 심사 시에는 단계별 심사위원 총 수 중 외부 심사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한다.

제19조(심사거부자에 대한 제재) ① 본 지침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심사위원이 거부할 경우 총장은 당해 심사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고, 단계별 심사위원 수에 맞추어 다른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나 거부,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심사위원의 점수만을 반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부)의 다음 회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면접심사

제20조(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면접심사위원회는 단과대학 또는 부서 면접심사위원회와 본부 면접심사위원회로 구성하며, 면접심사는 단과대학 또는 부서 면접을 실시한 후에 본부 면접을 실시한다.

② 단과대학 면접위원은 단과대학장, 당해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과대학 면접위원이 제4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은 부학장으로, 학과(부)장은 해당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부서 면접위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부부서장으로 구성하되, 제4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서장은 부부서장으로, 부부서장은 제12조 제3항제1호가목의 내부심사위원 중에서 부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③ 본부 면접위원은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대학원혁신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본부 면접위원을 별도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원자의 석·박사과정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면접심사) ① 면접위원은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과 품위, 연령 및 교육·연구수행 능력,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기준(별첨 3)에 따라 심사하여 면접심사평가서(별첨 7)를 작성하고 인비처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조실무분야와 실무경력분야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 심사기준(별첨 3-2 또는 별첨 3-3)에 따라 심사하여 ‘법조실무 및 실무경력분야 면접심사평가서’ (별첨 7-2)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분야는 산학협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5)에 따라 심사하여 ‘산학협력분야 면접심사평가서’ (별첨 7-3)를 작성하고, 미술학과 실기분야는 미술학과 실기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별첨 3-6)에 따라 심사하여 ‘미술학과 실기분야 면접심사평가서’ (별첨 7-4)를 작성하고 인비처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면접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평균 3점 이하(총점이 7점인 경우) 또는 2점 이하(총점이 5점인 경우) 점수를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법조실무분야와 실무경력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경우에는 본부면접위원 3분의 2 이상이 평균 7점 이하를 부여한 경우에 불합격 처리한다.

③ 공개강의 및 면접대상자가 면접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본부면접위원과 논의하여 채용예정 학과(부)에 채용여부를 다시 논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과(부)에서 채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 공개 및 특별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7장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의 조정

제22조(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의 조정) ①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규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대학 교원이 취득한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 분야와 다른 경우
2. 해당 대학교원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
- ② 특정 대학 출신자가 3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기초 및 전공심사와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총득점 순에 따라 조정하되, 당해 대학 출신자를 제외한 차순위 순서로 합격자를 정한다.
- ③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④ 모집단위별 적용은 충북대학교 학칙 제36조에 의한 <별표 5> ‘각 대학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규정에 따른 모집단위 또는 입학정원이 있는 전문 대학원의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별로 한다.

제8장 특별채용

제23조(특별채용) ①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업적과 경력을 가진 국내외 저명 학자를 채용할 경우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신진인력을 채용할 경우
2. 소속 학과(부) 전임교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추천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경우
3. 외국인 및 법조실무교원, 교양교육본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포함하여 대학 교육 정책상 필요한 경우
4. 공개채용과정에서 분쟁 등의 사유로 공채가 중단된 경우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특별채용은 추천방식과 공모방식으로 구분하며, 추천 시에는 특별채용사유서, 추천서, 담당과목별 시수조서, 공개채용 시 제출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채용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특별채용의 절차) ① 추천방식의 특별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의 특별채용 여부 결정
2. 공고
3. 본교 교원임용기준에 의한 각 단계별 심사(공개강의 심사 생략가능) 후 당해 단과대학장 및 부속기관장 등의 추천
4.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적격여부 심사
5. 본교 교원임용기준에 의한 연구실적물 심사
6. 채용신체검사, 전력, 비위·면직 등 실시
7.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예정 직명 결정
8. 임용

② 공모방식의 특별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의 특별채용 여부 결정
2. 공고
3. 예비심사
4. 기초 및 전공 심사
5. 공개강의 심사
6. 면접 심사
7. 본교 교원임용기준에 의한 연구실적물 심사
8. 채용신체검사, 전력, 비위·면직, 신원 조사 등 실시
9.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예정 직명 결정
10. 임용

제23조의3(교원특별채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채용 심사를 위하여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두며, 하부조직으로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대학원 혁신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본교 교원인 내부위원 4인과 본교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 공개채용 중단으로 실시하는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외부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④ 교원특별채용위원회 및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 구성 시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제23조의4(특별채용 단계별 심사)** ① 추천방식의 특별채용은 해당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등에서 단계별 심사를 거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 ②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적격여부 심사는 단과대학 단계별 심사의 하자여부 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 ③ 공모방식 특별채용의 예비심사는 소위원회 내부심사위원이 수행하고, 기초 및 전공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④ 공모방식 특별채용의 공개강의 심사위원 구성은 제15조를 준용한다.
- ⑤ 공모방식 특별채용 면접 중 부서 면접은 부서장과 관련 전공자가 수행하며, 본부 면접은 교원특별채용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⑥ 특별채용의 단계별 심사기준은 공개채용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9장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 제24조(연구실적물심사)** ① 최종합격자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물 심사를 한다. 다만, 법조실무분야, 산학협력분야, 의학계열 임상분야의 해당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및 의학계열 기초분야의 의사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심사는 타 대학(교) 전공전임교원 3인으로 한다.
- ③ 연구실적물 심사는 원서접수 마감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병역의무기간의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의 연구실적물(최근 3년 이내에 상관없이 최종학위 논문 포함) 200%를 3단계(수:10점, 우:8점, 미:6점)로 심사하여 연구실적심사조서(별첨8)를 작성한다. 다만 연구실적물은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출판된 저작물에 한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출판(전자출판) 및 게재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ISSN 또는 ISBN이 정식으로 부여된 공식적인 출판물은 인정한다.
- ④ 심사대상자는 평균 우(환산점수 8.0) 이상인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이어야 임용될 수 있다.

- 제25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총장은 각 심사단계별 배점에 의한 총 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고순위자 2인 이내에서 1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임용서류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장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총 득점자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기초 및 전공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2. 공개강의 점수가 높은 사람
3.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③ 제1항에 의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해당 부서에서 차순위자 임용을 소속 단과대학장 및 부속기관장 등을 경유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의무)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②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별 심사조서 및 심사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직명의 결정) ① 채용예정 직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1. 직명별 최소 교육 및 연구경력 연수는 교수 14년, 부교수 9년, 조교수 4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삭제 2012. 4. 4.)
3. 교육과 연구경력 중 중복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부교수 이상의 직명은 4년제 대학교(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HK(인문한국지원사업)교수 또는 기금교수로 근무한 경력과 겸임교원·초빙교원 등 해당 대학의 관계 규정상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대학원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상근한 경력만 인정한다.
5. (삭제 2012. 4.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조실무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0.10.27)
2. 법조실무교원은 법조실무경력(판사, 검사, 변리사로 근무한 경력 또는 변호사,

변리사로 개업한 기간)에 따라 부교수(10년 이상) 또는 조교수(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명을 부여한다.

3.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근무 경력에 따라 부교수(15년 이상) 또는 조교수(7년 이상 15년 미만)의 직명을 부여한다.

③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임용) ①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및 제11조에 의한 임용구비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해 계약제로 임용되며, 계약기간은 조교수 4년, 부교수 및 교수 6년으로 한다.

제28조의2(임용시기) 공고문에서 명시한 후순위 초빙분야 합격자의 임용시기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채용절차의 종료 및 정원배정 제한) ①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모집분야의 신규채용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신규채용 심사과정에서 학과(부) 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신규교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용 관련 민원이 동일사안으로 2회이상 제기된 경우에는 결원 및 신규충원에 있어서 이후의 신규채용예정 전임교원 정원배정을 2년 이상 유예한다.

③ 지원자 본인의 포기 이외의 사유로, 학과(부) 또는 부서에서 공개채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인사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기 공개채용 시 신규채용예정 전임교원 정원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기타 사항) 이 지침 상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08.3.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

임용기본지침(2007. 3. 22)은 폐지한다.

부 칙(2008.10.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지침은 2009학년도부터 신규채용되는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 4.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 4.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 10.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8. 4.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8. 10.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9. 3.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19.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0. 4. 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1. 3. 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1. 9.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2. 10. 1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3. 03.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3. 10. 1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4. 3. 1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4.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5. 1. 1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5. 3. 1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5. 4. 1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5. 7.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6. 4.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6. 9. 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전임교원 신규임용부터 적용한다.

< 별첨 1 >

응 모 지 원 서

충북대학교

(제 회)

응모분야	학과(부)	분야	접수번호	
------	-------	----	------	--

1. 기본 인적사항

주 소	우 (-)			사 진
성 명	(인) (한자 :)			
생년월일				
긴급연락처	전화번호 : (자택) (사무실) 핸드폰 : E-mail :			

2. 학 력

구 분	학 교 명 (한 글)	학 과 명	전 공	수학기간 (~)	취 득 일	학 위 명 (한 글)
학 사						
석 사						
박 사						

3-1. 강의경력 (최근 3년 이내)

임 용 기 간 (~)	임용기관(근무처)	직명 (직위)	담 당 직 무 (연구수행사항)	비 고

3-2. 연구경력 (최근 5년 이내)

임 용 기 간 (~)	임용기관(근무처)	직명 (직위)	담 당 직 무 (연구수행사항)	비 고

4. 기타 경력

기 간 (~)	임용기관(근무처)	직 명 (직위)	담 당 직 무	비 고

5-1. 석·박사 학위논문

논문종류	논 문 제 목	발표년월일	비 고

5-2. 최종학위논문 내용요지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의 목차 및 내용을 A4용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한글로 요약하여 첨부한다.

6-1. 대표연구실적물 및 기타연구실적물

- 대표연구실적물: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3년(또는 5년*) 이내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실적물(자연계: 5편, 인문사회계·예체능계: 2편)
- 기타연구실적물: 학위논문과 대표연구실적물을 제외한 최근 3년(또는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4조제6항에 의거 5년으로 인정받은 초빙분야에 한함.

관리 번호	실적물	게재지명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자 수	비고
		발표학회명	학술지명				

- 실적물은 국제규모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학술서적, 특허 등으로 표기 (지원자격에 SCIE 논문게재 실적을 제출하는 지원자는 비고에 SCIE 논문 표기)
- 학술서적은 ISBN이 부여된 학술저서·번역서에 한하며, 학습참고서, 수험서, 기술지도서, 칼럼집, 사전류 등은 인정하지 않음(국제학술저술, 국내학술저술로 구분 표기)
- 특허는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연구보고서, Proceeding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
- 게재지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 건축학과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6-1항목은 “별첨1-2”로 같음하되 논문, 작품 모두 포함
- 연구실적물 첨부
- 미술과 분야는 논문 또는 작품전
- 미술학과 실기분야의 경우 6-1항목은 “별첨1-3”로 같음하되 논문, 작품전 모두 포함

6-2. 논문내용 요지

<논문내용 요지>

7. 학술활동 등(최근 3년 이내)

학 회 명	직 명 (직위)	발 표 논 문	발표년월일

- ※ 학술활동은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거나 사회, 논평 등과 같은 학회활동 실적임
- ※ 학술활동은 학술대회 명, 발표일, 성명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인정

< 별첨 1-2 >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및 연구실적물 목록

1. 심사 목록

실적물 구분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자수	발표지	질심사 순 위	비고
최종 학위 논문						

2. 작성 요령

- 가.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먼저 기재하고, 이후부터는 연구실적물 질 심사 순위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실적물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 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산)에 발표된 설계 실적물을 기재
- 다. 실적물 구분란의 경우 국제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 작품은 ‘국제 당선’, 국제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 작품은 ‘국제 입상’,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 작품은 ‘국내 당선’, 국제 저명 건축 잡지 게재 작품은 ‘국제 게재’, ‘시공된 건축물로 공인된 국제적 상을 수상한 작품’은 ‘국제 수상’,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작품은 ‘국내 입상’, 국외 초대전시회 작품은 ‘국외 초대’, 관련 학·협회 초대전시회 작품은 ‘국내 초대’, 국내 건축 잡지 게재 작품은 ‘국내 게재’, 시공된 건축물로 국내 공공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작품 ‘국내 수상’, 국제 설계경기 및 공모전 출품작품은 ‘국제 출품’, 국외 전시회 작품은 ‘국외 전시’, 국내 전시회 작품은 ‘국내전시’로 작성
- 라. 질 심사 순위란에는 심사 대상 작품의 우선순위를 기재하되 300% 이내의 작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기재함.
- 마. 최종학위논문과 연구실적물(논문 및 저서)을 제외한 설계작품은 표창, 상장 및 사실확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실적물만을 인정

년 월 일

(분야) 지원자 성명 : (인)

< 별첨 1-3 >

미술학과 실기분야 작품전 및 연구실적물 목록

1. 심사 목록

실적물 구분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자수	발표지 (전시장소)	질적 심사 순 위	비고
최종 학위 논문						

2. 작성 요령

- 가.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먼저 기재하고, 이후부터는 연구실적물 질적 심사 순위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작품전부터 우선하여 순서대로 기재함.
- 나.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실적물 및 전문전시장(전시관)에서 발표된 작품전을 기재하며, 온라인 작품전, 아트페어 형식의 개인전은 인정하지 않음.
- 다. 실적물 구분란의 경우 작품전은 ‘개인전 및 단체전’ 으로 기재
- 라. 질적 심사 순위란에는 심사 대상 작품의 우선순위를 기재하되 300% 이내의 작품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기재함.
- 마. 최종학위논문과 연구실적물(논문 및 저서)을 제외한 개인전은 도록, 전시확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실적물만을 인정함.

년 월 일

(분야) 지원자 성명 : (인)

< 별첨 2 >

제 회 전임교원 자격 서류 심사조서

응 시 자	초빙분야			학 력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성 명							
경 력 사 항	연 구 경 력	근 무 처	직 명	근 무 년 월 일	기 간	환 산 율	환산기간	
		소 계						
	교 육 경 력							
		소 계						
	총 계							
자 격 판 정	법 정 자 격	응 시 자 경 력			응 모 자 격		종 합 판 정	
	연구 및 교육경력	연구경력	교육경력	계	가	부	적 격	부적격
연구실적		%	부적격사유	교수자격미달(), 응모자격미달(), 서류미비()				
심 사 자		교무과장 (인)			교무처장 (인)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I. 기초심사 : 전임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채용 분야의 전공 근접도 심사(28점)

1-1. 학부성적 심사 (2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2) : 학부성적이 매우 우수함

B (1) : 학부성적이 우수함

C (0) : 학부성적이 보통임

* 학부성적의 등급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1-2. 강의경력 심사(최근 3년 이내) (3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3)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B (2)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C (1)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D (0)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강의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3. 연구경력 심사(최근 5년 이내) (3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3)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B (2)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C (1)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D (0)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6개월 미만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1-2’항목 및 ‘1-3’항목에 적용사항

*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 강의 및 연구경력은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거 환산

* 경력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한가지 경력만 기재 인정함

1-4. 학술활동 심사 (4점)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4)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활발한 편임

B (3)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보통인 편임

C (1)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미흡한 편임

D (0)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없는 경우

* 학술활동의 범위는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이력서 7번 항목 참조)

1-5. 교육자로서의 학문의 신진성(현대성)을 고려할 때 발전가능성 심사(4점)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4) : 발전가능성이 탁월함

B (3) : 발전가능성이 우수함

C (2) : 발전가능성이 보통임

D (1) : 발전가능성이 미흡함

1-6. 최종학위논문 및 연구경력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7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7) :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 B (5) : 채용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C (3) : 채용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D (1) :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E (0) : 채용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논문” 대신 “졸업작품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졸업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1-7. 담당가능교과목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가능
- B (3)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가능
- C (1)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가능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35점), 가산점(20점)

2-1.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 심사 (10점)-----

취 득 점 수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상한점수 10점)

- A : 연구목적의 명확성(5점~2점)
- B : 연구과제의 창의성(5점~2점)
- C : 연구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5점~2점)
- D :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공헌도(5점~2점)

◆ 점수산출 방식

$$(A + B + C + D) \times 0.5 = \text{취득점수}$$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논문” 대신 “졸업작품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졸업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2-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 (20점)-----

취 득 점 수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연구업적심사는 연구실적물 등급점수(α), 발표자에 따른 점수(β), 채용분야 근접도 점수(γ), 중복성 판단점수(δ)를 심사하여 연구실적물 편당 취득점수(E)를 산정한다.
- 연구실적물 취득점수는 편당 취득점수를 총합산한 점수(상한점수 20점)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전국규모학술지 이상의 대표적인 연구실적물 : 자연계 5편, 인문사회계·예체능계 2편. 단, 인문사회계의 경우 논문이 한편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자연계의 경우 특허는 2개 이하만 인정하며 이 경우 등급은 C등급 이하로만 인정한다.(미술과 분야의 연구실적물은 논문 또는 작품전)
- 연구실적물 등급(α)은 당해학과(부)에서 정하되, 등급점수에 대한 등급 부여 평가기준은 참여자의 서명 날인 후 인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과외의 경우, 발표자에 따른 점수(β)를 산정함에 있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 따른 가산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δ (중복성 판단점수)는, 당해학과(부)에서 각 연구실적물 내용의 상호중복 여부를 합의판단하여 각 연구실적물 당 $0.0 \leq \delta \leq 1.0$ 점 범위에서 부여하며,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delta = 1.0$ 으로 잠정처리하고, 추후 학과(부)에서 부여한 δ 값을 곱하여 취득점수로 한다.

■ 실적물 편당 점수(E) 산출 방식

$$E = \frac{\alpha \times (1 + \beta + \gamma) \times \delta}{3}$$

α (연구실적물 등급 점수)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자연계	4.0	3.5	3.0	2.5	2.0	1.5
인문사회계 · 예체능계	10.0	8.5	7.0	6.0	5.0	4.0

1. SCI, SSCI, A&HCI 학술지 게재 논문: (공통) A~B등급 부여
2.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 (공통) A~C등급 부여
3.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자연계) B~D등급 부여, (인문사회계.예체능계) A~C등급 부여
4. 기타 국제학술지: (공통) C~F등급 부여
5. 기타 국내학술지: (공통) E~F등급 부여
6. 특허: (공통) C~F등급 부여

β (발표자수)

발표자수	점 수		비 고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공동	
단 독	1.0	1.0	수학과는 공동만 적용
2인	0.9	0.7	
3인	0.8	0.5	
4인이상	0.7	0.3	

γ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근 접 도	점 수	비 고
동일한 분야	1.0	
유사한 분야	0.8	
관련이 적은 분야	0.5	

※ 예 · 체능분야는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7점 × 취득점수)

2-3. 연구실적물의 양적심사(5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상당히 많은 편임

B (4)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많은 편임

C (3)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보통인 편임

D (1)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적은 편임

E (0)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없는 편임

※ 연구실적물의 양적 판단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 학위논문과 6-1의 대표연구실적물을 제외한 기타연구실적물

2-4.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20점) -----

A. B. C. D

■ 심사대상 및 방법

- 최상위 논문은 Science, Cell, 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함
- 심사대상 논문은 “2-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발표논문수, 발표자수, 채용분야의 근접도,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20), B(16), C(12), D(8)

III. 공개강의 심사 (23점)

3-1. 교수방법 및 영어강의 우수성 (8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8)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 B (6)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 C (4)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미흡함
- D (2)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부적절함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 B (4)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 C (2) : 강의내용이 미흡함
- D (1)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3-3. 질의응답 능숙성 (4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4)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 B (3)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 C (2)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 D (1)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3-4. 교육자로서의 자질 (6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6)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매우 우수함
- B (4)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적절하고 양호함
- C (2)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미흡함
- D (0)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부적절함

IV. 면접심사 (단과대학 : 7점, 본부 : 7점)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7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7)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B (4)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C (1)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7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7)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함

B (4)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보통임

C (1)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함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7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7)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B (4)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C (1)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3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법조실무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I. 기초심사(20점)

1-1. 학부성적 심사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90% 이상인 경우
- B (4)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C (2)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D (1) : 기타

1-2. 학위소지 여부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SJD, JSD 과정 포함)
- B (3) :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SJD, JSD 과정 포함)
- C (2) : 석사학위 소지자(JD, LLM 과정 포함)
- D (1) : 학사학위 소지자

1-3. 대학에서의 강의경력 여부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대학(사법 및 법무연수원 포함)에서 법학관련 과목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B (4) : 대학(사법 및 법무연수원 포함)에서 법학관련 과목의 강의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C (3) : 대학(사법 및 법무연수원 포함)에서 법학관련 과목의 강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1-4. 담당가능 교과목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 가능
- B (4)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 가능
- C (2)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 가능

II. 전공심사 (40점)

2-1. 연구업적(학위논문 포함)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법학관련 연구업적이 우수함
- B (4) : 법학관련 연구업적이 보통임
- C (3) : 법학관련 연구업적이 미흡함

2-2. 실무경력의 초빙분야와의 근접도 (10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동일함.
- B (8)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 C (6)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D (3)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E (0)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2-3. 실무자로서 법조계 근무경력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법조계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자
- B (4) : 법조계 근무연수가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 C (3) : 법조계 근무연수가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 ※ 법조계 근무경력(사법연수원 경력 포함)은 실 근무년수로 산정.

2-4. 법조실무경력 심사 (10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해당 분야와 관련된 법조실무경력이 우수함
- B (8) : 해당 분야와 관련된 법조실무경력이 양호함
- C (6) :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보통임
- D (3) :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미흡함

2-5. 학문적 발전가능성 (10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학문적 발전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B (8) : 학문적 발전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 C (6) : 학문적 발전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D (3) : 학문적 발전가능성이 낮은 경우

※ '1-1','1-2','1-3','2-3','2-4'항목 적용사항: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III. 공개강의심사 (20점)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7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7) : 교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 B (6) : 교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 C (4) : 교수방법이 미흡함
- D (2) : 교수방법이 부적절함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7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7)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 B (6)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 C (4) : 강의내용이 미흡함
- D (2)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A. B. C. D

3-3. 질의응답의 능숙성 (6점) -----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6)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 B (5)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 C (3)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 D (1)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IV. 면접심사 (단과대학 : 10점, 본부 : 10점)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10)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B (8)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C (6)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10)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함

B (8)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보통임

C (6)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함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10)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B (8)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C (6)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7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실무경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I. 기초심사(25점)

1-1. 학부성적 심사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90% 이상인 경우

B (4)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C (2)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D (1) : 기타

1-2. 학위소지 여부 (10점) -----

A. B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10) : 박사학위 소지자(SJD, JSD 과정 포함)

B (5) : 석사학위 소지자(LLM 과정 포함)

1-3. 대학에서의 강의경력 여부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대학(사법 및 법무연수원 포함)에서 법학관련 과목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B (4) : 대학(사법 및 법무연수원 포함)에서 법학관련 과목의 강의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C (2) : 대학(사법 및 법무연수원 포함)에서 법학관련 과목의 강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1-4. 담당가능 교과목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 가능

B (4)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 가능

C (2)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 가능

II. 전공심사 (35점)

2-1. 학사학위 과정의 초빙분야 근접도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학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이 초빙분야와 동일함.
- B (4) : 학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이 초빙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C (2) : 학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이 초빙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D (1) : 기타

2-2. 연구업적(학위논문 포함)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현행과 같음)

- A (5) : 법학관련 연구업적이 우수함
- B (3) : 법학관련 연구업적이 보통임
- C (1) : 법학관련 연구업적이 미흡함.

2-3. 실무경력(초빙분야와의) 근접도 (10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동일함.
- B (8)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 C (6)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D (3)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E (0)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2-4. 실무자로서 법조계 근무경력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법조계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자
- B (8) : 법조계 근무연수가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 C (5) : 법조계 근무연수가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 법조계 근무경력(사법연수원 경력 포함)은 실 근무년수로 산정.

2-5. 외국의 법조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외국의 법조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B (3) : 외국의 법조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C (1) : 외국의 법조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III. 공개강의심사 (20점)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7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7) : 교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B (6) : 교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C (4) : 교수방법이 미흡함
D (2) : 교수방법이 부적절함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7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7)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B (6)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C (4) : 강의내용이 미흡함
D (2)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3-3. 질의응답의 능숙성 (6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6)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B (5)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C (3)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D (1)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IV. 면접심사 (단과대학 : 10점, 본부 : 10점)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 B (8)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 C (6)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함
- B (8)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보통임
- C (6)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함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B (8)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C (6)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7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I. 기초심사 : 전임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채용 분야의 전공 근접도 심사(38점)

1-1. 학부성적 심사 (2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2) : 학부성적이 매우 우수함

B (1) : 학부성적이 우수함

C (0) : 학부성적이 보통임

* 학부성적의 등급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1-2 강의경력 심사(석사학위취득후의 경력에 한함) (3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3)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B (2)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C (1)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D (0)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강의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3 연구경력 심사(석사학위취득후의 경력에 한함) (3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3)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B (2)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C (1)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D (0)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6개월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 '1-2'항목 및 '1-3'항목에 적용사항

*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 강의 및 연구경력은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거 환산

* 경력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한가지 경력만 기재 인정함

1-4. 작품활동 심사 (4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4)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활발한 편임

B (3)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보통인 편임

C (1)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미흡한 편임

D (0)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없는 경우

* 작품 활동의 범위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 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1-5. 교육자로서의 학문의 신진성(현대성)을 고려할 때 발전가능성 심사 (4점)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4) : 발전가능성이 탁월함

B (3) : 발전가능성이 우수함

C (2) : 발전가능성이 보통임

D (1) : 발전가능성이 미흡함

1-6. 대학원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10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10)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B (8)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C (5)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D (2)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E (0)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는 특수전공분야로 “최종학위취득분야”로 한다.

1-7. 최종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7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7) :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 B (5) : 채용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C (3) : 채용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D (1) :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E (0) : 채용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논문” 대신 “졸업작품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졸업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1-8. 담당가능교과목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가능
- B (3)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가능
- C (1)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가능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35점)

2-1. 설계작품의 우수성심사 (15점) -----

취 득 점 수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o 설계작품 취득점수는 작품당 취득점수를 총 합산한 점수
- o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대표적인 설계 작품
- o 별첨 5-5의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우수성심사 평정표’를 이용한다.
- o 별첨 5-5의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우수성심사 평정표’는 기초 및 전공심사 위원회(외부 심사 위원 제외)에서 결정

2-2. 설계작품의 양적심사 (15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o 별첨 5-6의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양적심사 평정표’를 이용한다.
- A (15)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설계작품이 상당히 많은 편임
- B (12)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설계작품이 많은 편임
- C (9)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설계작품이 보통인 편임
- D (3)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설계작품이 적은 편임
- E (0)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설계작품이 없는 편임

※ 설계작품의 양적 판단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2-3. 외국의 건축실무관련 근무경력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UIA 인증프로그램 이수 후 국외 관련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B (3) : UIA 인증프로그램 이수 후 국외 관련기관 근무경력 1년이상 2년 미만인 자

C (1) : UIA 인증프로그램 이수 후 국외 관련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자

Ⅲ. 공개강의 심사 (17점)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6점) -----

A. B. C. D

A (6) : 교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B (5) : 교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C (3) : 교수방법이 미흡함

D (1) : 교수방법이 부적절함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6점) -----

A. B. C. D

A (6)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B (5)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C (3) : 강의내용이 미흡함

D (1)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3-3. 질의응답 능숙성 (5점) -----

A. B. C. D

A (5)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B (4)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C (3)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D (1)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IV. 면접심사 (단과대학 : 5점, 본부 : 5점)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 B (3)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 C (1)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함
- B (3)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보통임
- C (1)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함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B (3)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C (1)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와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2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산학협력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I. 기초심사(25점)

1-1. 학부성적 심사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90% 이상인 경우

B (4)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C (2) : 학부성적 평균평점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D (1) : 기타

1-2. 학위소지 여부 (10점) -----

A. B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10) : 박사학위 소지자(SJD, JSD 과정 포함)

B (5) : 석사학위 소지자(LLM 과정 포함)

1-3. 대학에서의 강의경력 여부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B (4) :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강의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C (2) :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강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1-4. 담당가능 교과목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5)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 가능

B (4)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 가능

C (2)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 가능

II. 전공심사 (35점)

2-1. 학사학위 과정의 초빙분야 근접도 (5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학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이 초빙분야와 동일함.
- B (4) : 학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이 초빙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C (2) : 학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이 초빙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D (1) : 기타

2-2. 연구업적(학위논문 포함)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공관련 연구업적이 우수함
- B (3) : 전공관련 연구업적이 보통임
- C (1) : 전공관련 연구업적이 미흡함.

2-3. 실무경력의 초빙분야와의 근접도 (20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20)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동일함.
- B (16)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 C (12)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D (6)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E (0) : 실무경력이 초빙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2-4. 전공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5) : 산업체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B (3) : 산업체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
- C (1) : 산업체 근무경력이 7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1-1','1-2','1-3','2-4' 항목 적용사항: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III. 공개강의심사 (20점)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7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7) : 교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 B (6) : 교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 C (4) : 교수방법이 미흡함
- D (2) : 교수방법이 부적절함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7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7)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 B (6)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 C (4) : 강의내용이 미흡함
- D (2)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3-3. 질의응답의 능숙성 (6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6)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 B (5)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 C (3)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 D (1)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IV. 면접심사 (단과대학 등 : 10점, 본부 : 10점)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 B (8)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 C (6)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산학협력 수행능력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수행 능력이 우수함
- B (8)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수행 능력이 보통임
- C (6)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수행 능력이 미흡함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10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 A (10)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B (8)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C (6)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7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미술학과 실기분야 전임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

I. 기초심사 : 전임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채용 분야의 전공 근접도 심사(38점)

1-1. 학부성적 심사 (2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2) : 학부성적이 매우 우수함

B (1) : 학부성적이 우수함

C (0) : 학부성적이 보통임

* 학부성적의 등급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1-2 강의경력 심사 (최근 3년 이내) (3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3)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B (2)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C (1)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D (0)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강의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3 연구경력 심사(석사학위취득후의 경력에 한함) (3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3)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B (2)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C (1)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D (0)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6개월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 '1-2'항목 및 '1-3'항목에 적용사항

*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 강의 및 연구경력은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거 환산

* 경력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한가지 경력만 기재 인정함

1-4. 작품활동 심사 (4점) -----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4)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활발한 편임

B (3)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보통인 편임

C (1)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미흡한 편임

D (0) :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이 없는 경우

* 작품 활동의 범위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 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1-5. 교육자로서의 학문의 신진성(현대성 및 작품성)을 고려할 때 발전가능성 심사 (4점)

A. B. C. D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4) : 발전가능성이 탁월함

B (3) : 발전가능성이 우수함

C (2) : 발전가능성이 보통임

D (1) : 발전가능성이 미흡함

1-6. 대학원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10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10)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B (8)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C (4)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D (2)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E (0) :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이 채용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7. 최종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7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7) :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 B (5) : 채용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C (3) : 채용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 D (1) :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 E (0) : 채용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논문” 대신 “졸업작품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졸업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1-8. 담당가능교과목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가능
- B (3)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가능
- C (1)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가능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34점)

2-1. 연구실적물(작품전)의 우수성심사 (15점) -----

취 득 점 수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o 연구실적물(작품) 취득점수는 작품전의 취득점수를 총 합산한 점수
- o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실적물(작품)
- o 별첨 5-9의 ‘연구실적물(작품) 의 우수성심사 평정표’를 이용한다.
- o 별첨 5-9의 ‘연구실적물(작품) 의 우수성심사 평정표’는 기초 및 전공심사 위원회(외부 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2-2. 연구실적물(작품전)의 양적심사 (10점) -----

A. B. C. D. E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o 별첨 5-10의 ‘연구실적물(작품) 의 양적심사 평정표’를 이용한다.
- A (10)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작품) 이 상당히 많은 편임
- B (8)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작품) 이 많은 편임
- C (6)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작품) 이 보통인 편임
- D (4)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작품) 이 적은 편임
- E (0) : 최근 3년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작품) 이 없는 편임

※연구실적물(작품전)의 양적 판단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2-3. 연구실적물(작품) 포트폴리오 심사 (석사학위취득 후의 실적물에 한함) (9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9) :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구성이 탁월함
- B (6) :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구성이 우수함
- C (3) :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구성이 보통임
- D (1) :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구성이 미흡함

III. 공개강의 심사 (18점)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8점) -----

A. B. C. D

- A (8) : 교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 B (6) : 교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 C (4) : 교수방법이 미흡함
- D (1) : 교수방법이 부적절함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6점) -----

A. B. C. D

- A (6)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 B (4)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 C (2) : 강의내용이 미흡함
- D (1)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3-3. 질의응답 능숙성 (4점) -----

A. B. C. D

- A (4)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 B (3)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 C (2)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 D (1)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IV. 면접심사 (단과대학 : 5점, 본부 : 5점)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 B (3)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 C (1)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함
- B (3)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보통임
- C (1)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함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5점) -----

A. B. C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 A (5)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B (3)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C (1)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와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2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별첨 4 >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초빙학과(분야) :

위 본인은 제 회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의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관리)를 할 것이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사실 및 평가 결과를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것은 물론 심사 결과의 누출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척·회피 사유	해당여부(√ 표시)	
•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예 ☐	아니오 ☐
•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이거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예 ☐	아니오 ☐
•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	아니오 ☐

※ 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별첨 5 >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서

심사위원 전공		직명	성명	(인)	
응시 번호		초빙분야		성명	
구분	심사항목 심사등급 (점수)			평가점수	비고
I. 기초심사	1- 1 학부성적 심사 A(2), B(1), C(0)				
	1- 2 강의경력 심사 A(3), B(2), C(1), D(0) (최근 3년 이내)				
	1- 3 연구경력 심사 A(3), B(2), C(1), D(0) (최근 5년 이내)				
	1- 4 학술활동 심사 A(4), B(3), C(1), D(0)				
	1- 5 교육자로서 학문의 신진성(현대성)을 고려할 때 발전가능성 심사 A(4), B(3), C(2), D(1)				
	1- 6 학위과정, 최종학위논문 연구경력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A(7), B(5), C(3), D(1), E(0)				
	1- 7 담당가능 교과목 심사 A(5), B(3), C(1)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	2- 1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 심사 (상한점수 10점) (A+B+C+D) × 0.5 = 취득점수				

구 분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II. 전공심사 연구업적심사	2- 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		총합산점수 기재
	※ 2- 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 점수 산출내역 (심사기준 2-2항 참조) ■ 1편 = $\frac{a(\quad) \times \{1 + \beta(\quad) + \gamma(\quad)\} \times \delta(\quad)}{3} = E^1 (\quad)$ ■ 2편 = $\frac{a(\quad) \times \{1 + \beta(\quad) + \gamma(\quad)\} \times \delta(\quad)}{3} = E^2 (\quad)$ ■ 3편 = $\frac{a(\quad) \times \{1 + \beta(\quad) + \gamma(\quad)\} \times \delta(\quad)}{3} = E^3 (\quad)$ ■ 4편 = $\frac{a(\quad) \times \{1 + \beta(\quad) + \gamma(\quad)\} \times \delta(\quad)}{3} = E^4 (\quad)$ ■ 5편 = $\frac{a(\quad) \times \{1 + \beta(\quad) + \gamma(\quad)\} \times \delta(\quad)}{3} = E^5 (\quad)$ ■ 편당 취득점수를 합산한 점수(자연계) $E^1(\quad) + E^2(\quad) + E^3(\quad) + E^4(\quad) + E^5(\quad) = \text{총합산점수}(\quad)$ ■ 편당 취득점수를 합산한 점수(인문사회계 · 예체능계) $E^1(\quad) + E^2(\quad) = \text{총합산점수}(\quad)$ ※ ()에 해당점수 기재 ※ 소수점 처리 - 각 편당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총 합산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2- 3 연구실적물의 양적 심사 A(5), B(4), C(3), D(1), E(0)		
합 계			
가산점 심사	2- 4 최상위 논문(Science, Cell, Nature) 게재자 가산점 심사 A(20), B(16), C(12), D(8)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별첨 5-2 >

법조실무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응시 번호		심사위원 전공	직명	성명	(인)
		초빙분야			
구 분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평가점수	비 고
I. 기초심사		1- 1 학부성적 심사 A(5), B(4), C(2), D(1)			
		1- 2 학위소지 여부 A(5), B(3), C(2), D(1)			
		1- 3 대학에서의 강의경력 여부 A(5), B(4), C(3)			
		1- 4 담당가능 교과목 A(5), B(4), C(2)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		2- 1 연구업적(학위논문 포함) A(5), B(4), C(3)			
		2- 2 실무경력의 초빙분야와의 근접도 A(10), B(8), C(6), D(3), E(0)			
		2- 3 실무자로서 법조계 근무경력 A(5), B(4), C(3)			
		2- 4 법조실무경력 심사 A(10), B(8), C(6), D(3)			
		2- 5 학문적 발전가능성 A(10), B(8), C(6), D(3)			
합 계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별첨 5-3 >

실무경력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심사위원 전공

직명

성명

(인)

응시 번호		초빙분야		성 명	
구 분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평가점수	비 고
I. 기초심사	1- 1 학부성적 심사 A(5), B(4), C(2), D(1)				
	1- 2 학위소지 여부 A(10), B(5)				
	1- 3 대학에서의 강의경력 여부 A(5), B(4), C(2)				
	1- 4 담당가능 교과목 A(5), B(4), C(2)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	2- 1 학사학위 과정의 초빙분야 근접도 A(5), B(4), C(2), D(1)				
	2- 2 연구업적(학위논문 포함) A(5), B(3), C(1)				
	2-3 실무경력의 초빙분야와의 근접도 A(10), B(8), C(6), D(3), E(0)				
	2- 4 실무자로서 범조계 근무경력 A(10), B(8), C(5)				
	2- 5 외국의 범조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 A(5), B(3), C(1)				
합 계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별첨 5-4 >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심사위원 전공

직명

성명

(인)

응시 번호		초빙분야		성 명	
구 분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평가점수	비 고
I. 기초심사	1- 1 학부성적 심사 A(2), B(1), C(0)				
	1- 2 강의경력 심사 A(3), B(2), C(1), D(0)				
	1- 3 연구경력 심사 A(3), B(2), C(1), D(0)				
	1- 4 작품활동 심사 A(4), B(3), C(1), D(0)				
	1- 5 교육자로서의 발전가능성 A(4), B(3), C(2), D(1)				
	1- 6 대학원 전공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A(10), B(8), C(5), D(2), E(0)				
	1- 7 최종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A(7), B(5), C(3), D(1), E(0)				
	1- 8 담당가능교과목 A(5), B(3), C(1)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	2- 1 설계작품의 우수성 심사 (별첨 5-5 우수성 심사 평정표 첨부)				
	2- 2 설계작품의 양적심사 (별첨 5-6 양적 심사 평정표 첨부) A(15), B(12), C(9), D(3), E(0)				
	2- 3 외국의 건축실무관련 근무경력 A(5), B(3), C(1)				
합 계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별첨 5-5 >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우수성 심사 평정표

가. 응시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응시 학과	학과	응시분야	

나. 평정 내역

실적1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A	B	C
	수준 및 창의성	8	6	4
	학문 및 사회적 기여도	7	5	3
실적2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A	B	C
	수준 및 창의성	8	6	4
	학문 및 사회적 기여도	7	5	3
실적3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A	B	C
	수준 및 창의성	8	6	4
	학문 및 사회적 기여도	7	5	3
실적4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A	B	C
	수준 및 창의성	8	6	4
	학문 및 사회적 기여도	7	5	3
실적5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A	B	C
	수준 및 창의성	8	6	4
	학문 및 사회적 기여도	7	5	3
실적6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A	B	C
	수준 및 창의성	8	6	4
	학문 및 사회적 기여도	7	5	3
평균평점	(개별작품 환산율×평정점수)의 합÷개별작품 환산율의 합			
심사 기준	1. 질 심사를 신청한 실적 중 본인이 작성한 순위에 의거 200% 까지만 심사 2. 200% 미달자는 취득점수의 합/200 3. 환산율 : 저자수 1인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 별첨 5-6 >

건축학과 건축설계분야 설계작품 양적심사 평정표

가. 응시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응시 학과	학과	응시분야	

나. 평정 내역

연번	제 목	일치여부 (○,×)	실적물 구분	발표자수	양 평가 점수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총 () 점				

※작성 방법

- 실적물 구분란의 경우 국제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 작품은 '국제 당선', 국제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 작품은 '국제 입선',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 작품은 '국내 당선', 국제 저명 건축 잡지 게재 작품은 '국제 게재', '시공된 건축물로 공인된 국제적 상을 수상한 작품'은 '국제 수상',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작품은 '국내 입상', 국외 초대전시회 작품은 '국외 초대', 관련 학·협회 초대전시회 작품은 '국내 초대', 국내 건축 잡지 게재 작품은 '국내 게재', 시공된 건축물로 국내 공공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작품 '국내 수상', 국제 설계경기 및 공모전 출품작품은 '국제 출품', 국외 전시회 작품은 '국외 전시', 국내 전시회 작품은 '국내 전시'로 작성
- 양 심사 기준

구 분	실 적 내 용	점 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건축 설계	·국제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작품	10	7	5	3
	·국제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작품	9	6.3	4.5	2.7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작품				
	·국제 저명 건축잡지 게재작품				
	·시공된 건축물로 공인된 국제적 상을 수상한 작품	8	5.6	4.0	2.4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작품				
	·국외 초대전시회 작품				
	·관련 학·협회 초대전시회 작품				
	·국내 건축잡지 게재작품	7	4.9	3.5	1.8
	·시공된 건축물로 국내 공공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작품				
	·국제 설계경기 및 공모전 출품작품				
	·국외 전시회 작품	6	4.2	3.0	1.8
	·국내 전시회 작품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 별첨 5-7 >

산학협력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심사위원 전공		직명		성명		(인)	
응시 번호		초빙분야		성 명			
구 분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평가점수	비 고		
I. 기초심사		1- 1 학부성적 심사 A(5), B(4), C(2), D(1)					
		1- 2 학위소지 여부 A(10), B(5)					
		1- 3 대학에서의 강의경력 여부 A(5), B(4), C(2)					
		1- 4 담당가능 교과목 A(5), B(4), C(2)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		2- 1 학사학위 과정의 초빙분야 근접도 A(5), B(4), C(2), D(1)					
		2- 2 연구업적(학위논문 포함) A(5), B(3), C(1)					
		2- 3 실무경력의 초빙분야와의 근접도 A(20), B(16), C(12), D(6), E(0)					
		2- 4 전공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A(5), B(3), C(1)					
합 계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별첨 5-8 >

미술학과 실기분야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서

심사위원 전공		직명		성명		(인)	
응시 번호		초빙분야		성 명			
구 분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평가점수	비 고		
I. 기초심사		1- 1 학부성적 심사 A(2), B(1), C(0)					
		1- 2 강의경력 심사 A(3), B(2), C(1), D(0)					
		1- 3 연구경력 심사 A(3), B(2), C(1), D(0)					
		1- 4 작품활동 심사 A(4), B(3), C(1), D(0)					
		1- 5 교육자로서의 발전가능성 A(4), B(3), C(2), D(1)					
		1- 6 대학원 전공분야 및 전공이수과목과 채용분야의 근접도 A(10), B(8), C(4), D(2), E(0)					
		1- 7 최종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A(7), B(5), C(3), D(1), E(0)					
		1- 8 담당가능교과목 A(5), B(3), C(1)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		2- 1 연구실적물(작품전)의 우수성 심사 (별첨 5-9 우수성 심사 평정표 첨부)					
		2- 2 연구실적물(작품전)의 양적심사 (별첨 5-10 양적 심사 평정표 첨부) A(10), B(8), C(6), D(4), E(0)					
		2- 3 연구실적물(작품) 포트폴리오 심사 A(9), B(6), C(3), D(1)					
합 계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별첨 5-9 >

미술학과 연구실적물(작품전) 우수성 심사 평정표

가. 응시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응시 학과	학과	응시분야	

나. 평정 내역

실적1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취득점수		
		A	B	C			
	작품전의 수준	8	6	4			
	전시작품의 창의성	7	5	3			
실적2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취득점수		
		A	B	C			
	작품전의 수준	8	6	4			
	전시작품의 창의성	7	5	3			
실적3	제목				실적물 구분		
%	심사항목	심 사 점 수			취득점수		
		A	B	C			
	작품전의 수준	8	6	4			
	전시작품의 창의성	7	5	3			
평균평점				(개별작품 환산율×평정점수)의 합÷개별작품 환산율의 합			
심사 기준	1. 실적 심사는 신청한 실적 중 본인이 작성한 순위에 의거 300% 까지만 심사 2. 300% 미달자는 취득점수의 합/300 3. 환산율 : 저자수 1인100%, 2인 50%, 3인 30%, 4인 이상 20%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 별첨 5-10 >

미술학과 연구실적물(작품전) 양적심사 평정표

가. 응시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응시 학과	학과	응시분야	

나. 평정 내역

연번	제 목	일치여부 (○,×)	실적물 구분	발표자수	양 평가 점수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총 () 점				

※작성 방법

- 실적물 구분란의 경우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전문전시장(전시관)
- 개인전 전시확인서 첨부
- 국내외 단체전 1회는 하단의 양적 심사 기준 적용
- 온라인 전시는 인정하지 않음.
- 아트페어 형식의 개인전은 인정하지 않음.

· 양적 심사 기준

구 분	실 적 내 용	점 수			
		1인	2인	3인	4인
연구실적물 (작품전)	·국내 · 외 개인전	10			
	·2인 단체전		5		
	·3인 단체전			3	
	·4인 이상 단체전				2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 별첨 6 >

공 개 강 의 심 사 서

심사위원 전공 : 직명 : 성명 (인)

응시번호		초빙분야		성명	
3-1. 교수(영어강의)방법의 우수성			A(8), B(6), C(4), D(2)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A(5), B(4), C(2),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3. 질의응답 능숙성			A(4), B(3), C(2),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4. 교육자로서의 자질			A(6), B(4), C(2), D(0)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합 계		점 수 :			

< 별첨 6-2 >

법조실무 및 실무경력분야 공개강의심사서

심사위원 전공 : 직명 : 성명 (인)

응시번호		초빙분야		성명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A(7), B(6), C(4), D(2)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A(7), B(6), C(4), D(2)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3. 질의응답의 능숙성				A(6), B(5), C(3),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합 계	점 수 :				

< 별첨 6-3 >

산학협력분야 공개강의심사서

심사위원 전공 : 직명 : 성명 (인)

응시번호		초빙분야		성명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A(7), B(6), C(4), D(2)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A(7), B(6), C(4), D(2)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3. 질의응답의 능숙성				A(6), B(5), C(3),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합 계	점 수 :				

〈 별첨 6-4 〉

미술학과 실기분야 공개강의심사서

심사위원 전공 : 직명 : 성명 (인)

응시번호		초빙분야		성명	
3-1. 교수방법의 우수성				A(8), B(6), C(4),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2. 강의내용의 충실성				A(6), B(4), C(2),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3-3. 질의응답의 능숙성				A(4), B(3), C(2), D(1)	
<u>심사의견</u>				평	등 급
				점 수	
				가	
합 계	점 수 :				

< 별첨 7 >

면 접 심 사 평 가 서

면접위원 직위 : 성명 (인)

채용예정학과			채용예정분야		
응 시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 . . ()
학 력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주 요 경 력					
면 접 심 사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비 고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A(7), B(4), C(1)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A(7), B(4), C(1)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A(7), B(4), C(1)
	합 계				
	평 균 점 수				C등급 평 가 항목수
※ 종합적인 면접의견					

〈 별첨 7-2 〉

법조실무 및 실무경력분야 면접심사평가서

면접위원 직위 : 성명 (인)

채용예정학과			채용예정분야		
응 시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 · · ()
학 력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주 요 경 력					
면 접 심 사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비 고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A(10), B(8), C(6)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A(10), B(8), C(6)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A(10), B(8), C(6)
	합 계				
	평 균 점 수				C등급 평 가 항목수
※ 종합적인 면접의견					

〈 별첨 7-3 〉

산학협력분야 면접심사평가서

면접위원 직위 : 성명 (인)

채용예정학과			채용예정분야		
응 시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 (.) . ()
학 력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주 요 경 력					
면 접 심 사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비 고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A(10), B(8), C(6)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산학협력 수행능력 심사				A(10), B(8), C(6)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A(10), B(8), C(6)
	합 계				
	평 균 점 수				C등급 평 가 항목수
※ 종합적인 면접의견					

< 별첨 7-4 >

미술학과 실기분야 면접심사평가서

면접위원 직위 : 성명 (인)

채용예정학과			채용예정분야		
응 시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 . . ()
학 력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주 요 경 력					
면 접 심 사	심 사 항 목		심사등급 (점수)		비 고
	4-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A(5), B(3), C(1)
	4-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A(5), B(3), C(1)
	4-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A(5), B(3), C(1)
	합 계				
	평 균 점 수				C등급 평 가 항목수
※ 종합적인 면접의견					

< 별첨 8 >

연 구 실 적 심 사 조 서					
논문제목		평 가	수	우	미
심사논문		발표년월일		발표기관명	
(심사요지) ※ 평가란에 평가후 날인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명: 전공분야 : 성 명 :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